

2019학년도 2학기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

학칙 제47조(휴학), 제48조(복학), 영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(휴학과 복학)에 의거하여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1. 복학

가. 신청기간 : 2019.07.22.(월)~2019.07.25.(목)

나. 신청방법 : uDRIMS로 신청

대 상	신청방법	비고
휴학기간 만료자	[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복학신청/취소등록]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	군 휴학기간 만료자는 주민등록초본, 전역증,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휴학자가 전역(예정)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,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 •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“휴학기간 만료 제적” 처리됨 	

2. 휴학

가. 신청기간 : 2019.07.22.(월)~2019.07.25.(목)

나. 신청방법 : uDRIMS로 신청

1) 일반 휴학/휴학기간 연장

휴학가능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, 박사 : 통산 4학기 ※ 단,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2개학기 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4주 이상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)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휴학 :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• 일반휴학연장 :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•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“휴학기간 만료 제적” 처리됨

2) 군 휴학

휴학가능기간	•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군휴학’으로 선택 • 제출서류 : 입영통지서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영명령서(영장)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(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) •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[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

3)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

휴학가능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·출산휴학 : 여학생 본인의 임신·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※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: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여학생의 경우,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임신출산휴학’ 또는 ‘육아휴학’으로 선택 제출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·출산 휴학 :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 : 가족관계증명서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원생이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4) 창업휴학

휴학가능기간	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창업휴학’으로 선택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(단, 입학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한함)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,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청년기업가센터(교내 4994)로 문의 후 진행할 것.

5) 질병휴학

신청기간	수시
신청방법	영산대학원 교학팀 직접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휴학원(영산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), 4주 이상 진단서(종합병원장이 발행)

다.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

※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은 ‘휴학 신청일’을 기준으로 함.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	징수(공제) 금액	비고
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	전액	-	
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	5/6 반환	1/6 징수(공제)	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2/3 반환	1/3 징수(공제)	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1/2 반환	1/2 징수(공제)	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미반환	전액	

3. 유의사항

가.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

나.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[2019.08.22.(목)~2019.08.28.(수)]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

다. 외국인 학생(화교 포함)의 경우,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교학팀에서 접수

2019. 7.

영 상 대 학 원 장